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2023-00	신청기관 (부서명)	000000000000원
건명	외부강의 신고 및 겸직허가 대상 관련		

1. 컨설팅 개요

○ 사전 개요

- 신입직원(00.0.입사) 중 개인 취미 일환으로 미술 작품 활동하며 입사전 아트 페어에 작품을 출품함
- 아트 페어 측에서 참가명목으로 연말 수당 지급 예정 (*금액 확인불가)
- 아트 페어 전시 중 출품 작품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거래되기도 함

2. 컨설팅 요청 사유

○ ‘사례금을 받는 전시 행위’의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여부

- 「2023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중 ‘각종 연주회·전시회 등에 서의 연주·공연·전시 등 행위’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기재되어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이 아님
- ‘사례금이 발생하는 전시행위’도 이에 해당해 외부강의 등 신고가 불필요한지 해석이 모호함

○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미술 전시 활동 행위의 영리 업무 행위 여부 및 겸직허가 대상여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진흥원 복무규정」 제3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허가) 및 「진흥원 복무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직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원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개인 취미 일환으로 미술 작품 활동을 함에 있어 아트페어에 작품을 출품해 작품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거래되기도 함
- 해당 활동은 영리업무 보다는 개인취미활동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나, 작품 판매 금액의 상한액 기준이 없어 천차만별의 금액대로 거래될 수 있어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행할 수 있기에 판매 행위를 금지시켜야 하는 것인지,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겸직허가 통한 해당 활동을 허가해도 문제가 없는지 판단이 모호함

○ 신청사유

- 미술작품 활동 외에도 유튜브 등 직원의 개인적 수익 창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행정 차원에서 처리사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나, 기관 개원 이래 해당 사례가 없어 의사결정이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처리가 모호함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게 됨

3. 신청기관 의견 등

- '사례금이 발생하는 전시행위'더라도 입사 전 출품해 연말에 사례금을 수령하고, 전시행위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기에 외부강의 등의 신고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직무상 능률 저해 행위가 아니고, 계속적이더라도 재산상의 이득 목적 보다는 개인 취미활동에 가까우므로 '영리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아트페어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작품 활동이 계속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검토 결과 및 의견

- ◇ 0000000000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

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음.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 그리고 「000000000000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 제35조에 따르면, 1.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법인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 또 위 「복무규정」 제36조에 따르면, 직원이 제3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 본 건의 경우 우선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취미로 미술작품 활동을 하고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원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지 않았고, 그 형식에 있어서도 전시회는 외부강의 등이 아니므로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다음으로 금지되는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직원이 전시회를 주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전시회 준비와 밀접

한 관련이 있지 않고 단지 취미활동의 결과물을 출품하고 참가에 따른 수당 또는 실비변상적 수당만 받는다면,

- 1회성 참가 및 작품의 판매가능성만으로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보이지 않아 「복무규정」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그러한 행위가 규정상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물론 겸직허가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향후 개인 취미에 머무르지 않고 주기적 또는 계속적인 전시회 참여 등 준작가로서의 활동이 명백하여 그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직업상의 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면 겸직허가의 대상으로 허가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